

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공고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2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2023.03.07.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2월 20일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국가기초구역 개요

○ 기초구역 도입배경

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

○ 기초구역 정의

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·면·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

○ 기초구역 활용범위

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,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

2. 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현황

| 시군구명 | 설정 등 현황 | | | 예비구역 번호 수 |
|------|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|
| | 설정 | 변경 | 폐지 | |
| 서구 | 0 | 3 | 0 | 116 |

※ 국가기초구역 설정·변경 및 폐지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이를 서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하며 이를 서구 토지정보과(☎032-560-4830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3.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: 2023년 5월 1일

4.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(032-560-4830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